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August _ Vol. 101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폭염철 커피·생과일주스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식용얼음수거·검사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쫓기 위해 마시는 시원한 음료(아이스커피, 티, 생과일주스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업체 3,000여 곳에 대해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커피전문점, 생과일주스전문점 등 아이스 음료 조리·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료 조리·판매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시정명령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8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토탈 식품위생 솔루션

세스코 식품안전위생진단 서비스

1 Step

FOOD SAFETY CONSULTANT

외식업장의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2 Step

3,021

조리시설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3,021가지의 기준으로 철저히 진단합니다

3 Step

UPGRADE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4 Step



세스코의 다양한 업장홍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깨끗한 맛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가을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사전 예고

-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6,000여 곳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 중, 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학기 합동점검이 개학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보존식 미보관	영업정지 7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3일)

대구시, 중국산 산낙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음식점 단속

- 낙지전문식당 7개소 적발. 조사

대구광역시시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으로, 지역별로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렵게 되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8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並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광역시청, 8월 8일)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결과정보공개 확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 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 먼저, 통관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다만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영업 등록 시 독립된 사무소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3일)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키고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업종에 제과점 추가 등이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8월 2일)



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제4호)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점검기준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 상향 평준화된 객관적 평가 시각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



- 충분한 인적, 물적, 경험적 자원 확보
- 해외식품 위생평가 대상업체 접근 편의성 확보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준 높은 평가기관



- 위생평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생평가원 심사 및 평가 체계 구축
- 위생평가원 윤리의식 강화

공인검사기관 영양성분 검사결과를 허용 오차 적용 예외 인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영양성분을 2개 이상의 식품, 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3일)

커피전문점, 제과점영업자도 위생등급제 신청할 수 있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의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에 일반음식점영업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법령을 일부개정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업종 확대 :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추가
2.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확인서류 등 간소화
 - 1) 군사시설 등에서 식품 영업신고(변경)를 하려는 자가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확인서류에서 제외
 - 2) 건축물대장에 등록전인 신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영업자가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4.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모든 영업자로 허용
 - 2)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품·의약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
5. 행정처분 기준 개정
 - 1) 식품접객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15일로 유지하고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로 조정
 -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항목을 온도기준 위반행위와 기타 위반행위로 나누어 온도기준 위반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7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조정
 - 3)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인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그 처분기준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개정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9일)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18년 8~9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가을 신학기 식재료판매업체 및 조리.판매업체 합동점검	학교 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8.20 ~ 8.28
○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8.27 ~ 9.4
○ 추석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9.3 ~ 9.11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교차 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	9.13 ~ 9.19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 GMO 표시 대상 확대 관련 민원 설명회 -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안전성 승인이 8월31일로 예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의거하여 승인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6종 → 7종)
 - 1) (현재 표시대상)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과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그 가공식품
 - 2) (표시대상 확대) 감자 및 그 가공식품이 GMO 표시대상에 포함
 - 3) (표시 의무적용 시기) 유전자변형 감자 승인 이후 2018년 8월31일 부터 제조·수입(선적일 기준)되는 감자 및 그 가공식품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방법
 -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 관련서류(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중 택1) 구비하는 경우
3. 민원설명회 장소 및 일자
 - 1) 대전식약청 강당 : 8/14(화) 10:00~12:00
 - 2) 대구식약청 강당 : 8/14(화) 15:30~17:30
 - 3) aT센터 그랜드홀(5층) : 8/16(목) 14~16시
 - 4) 부산식약청 : 8/17(금) 10~12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9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8/22, 9/5)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8/22, 9/5)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8/23~24, 9/6~7)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HACCP 팀장 또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8/21)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9/4)

- 표시 업무를 직접하는 강사의 노하우를 한번에!~
- 표시 연관 법령을 한눈에 소개 (법, 공전, 기타 법령)
- 사례 위주로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원산지,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표시작성, 제품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환급

환급